

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

1. 개정이유
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94호)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하여 재발령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유효기한 재검토 시점을 2022년 1월 13일로 재설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